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7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최수진·권성동·박충권

안상훈 • 박준태 • 서일준

김성원 · 이인선 · 강선영

백종헌 • 조경태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 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당사자"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하며, "외국대리인"이라 함은 외국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외국당사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명령·지시·통제를 받거나 자금지원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정치적 활동·정책자문·홍보자문·모금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 다.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그 등록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 ·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서류 및 보충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외국대리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외국대리인이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외국대리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은 직접전달, 우편 및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고,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 본 2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바. 외국대리인은 그의 활동에 따른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을 해당 연 도의 말일까지 외국대리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 사.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에게 회계장부와 그 밖의 활동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 아.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서류, 보충서류와 그 첨부 서류, 인쇄물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서류·보충서류·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여부, 그 밖에 이 법의 준수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외국대리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할 수 있음(안 제12조).
-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활동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안 제15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당사자"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이 법에서 "단체"는 조합, 협회, 기업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2.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피고용인, 사자(使者) 등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외국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감독, 통제에 따르거나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자문, 관련 자료제출, 홍보자문, 모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외국당사자와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활동하는 사

람도 포함한다).

- 3. "외국정부"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나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에 서 사실상·법률상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하위조직 및 사실상·법률상의 주권적 권한 또는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위임받은 단체나 기관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 4. "외국정당"이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자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 5. "등록서류 등"이란 제3조에 따라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서류 및 보충서류를 말하고, 이는 그와 함께 제출되거나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문서 또는 관계 서류로서 그에 첨부되거나 인용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제2장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취소

제3조(등록 등) ①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대리인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했거나 수령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 금품의 내역 및 이와 관련한 지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그 등록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외국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 법에 따라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한 내역, 소요경비 등과 관련한 보충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외국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등록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외국대리인에게 그 소명 또는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진술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외국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서류 제출 등 그 밖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기관 간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이 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5조(등록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의 등록의무 를 면제한다.
 -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2. 외국정부의 공무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
 - 4. 종교·학문·예술 또는 과학적 연구와 관련된 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 5.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
 - 6. 대한민국 국방에 중요한 동맹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방상의 협력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국내·대외 정책과 상충의도가 없는 활동만을 영위하는 사람
 - 7. 법무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거나 그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등록의 취소 및 외국대리인 업무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적시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 3. 그 밖에 외국대리인 등록을 유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서류의 제출의무, 수시 자료제출요구 등을 포함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외국대리인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제3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외국 대리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제8조(외국대리인활동에 있어서의 신분표시) 외국대리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리인 활동의 대상자에게 본인의 신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인쇄물 등의 전달 및 사본 제출) ① 외국대리인은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인쇄물 등 자료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에게 우편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인쇄물 등 자료를 전달(우편・이메일 등에 기재된 발송시점이나 전자매체 게시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본 2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등 자료에는 그 배포자가 외국대리인이 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쇄물 등의 전달 및 사본제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① 외국대리인은 그 활동에 따른 회계장 부와 활동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연도의 말일까 지 외국대리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② 외국대리인은 그 지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활동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회계

장부와 그 밖의 활동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고의로 외국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는 회계장부나 활동기록 등을 위조, 변조, 손괴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의 사무처리 및 회계관행 등을 존중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계장부 및 기록을 적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서류 등 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서류 등을 포함하여 이 법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외국대리인 이 제출한 등록서류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서류 등의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조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 제6조제1항 위반 여부, 제10

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장부와 그 활동기록의 사실여부, 그 밖에 이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대리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외국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외국대리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규칙제정권)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 2. 고의로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3.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외국대리 이으로 활동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그 밖의 활동기록을 비치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회계장부와 그 밖의 활동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과실로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제12조에 따라 조사·지원을 요청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도 포함한다)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사람
- ④ 외국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쇄물등 자료를 배포하면서 외국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등록서류 등을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해당 조항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제8조를 위반하여 신분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대리인으로 활동(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벌칙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한다.